

지방세 운영 유공공무원 선진 지방세 제도 해외 정책연수 결과 보고서

요 약 사 항

- 목 적 : 선진 지방세 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역량 강화
- 기 간 : 2019. 6. 8.(토) ~ 6. 19.(수) / 10박12일
- 연수국가 : 동유럽(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 연 수 자 : 3명
- 주요활동
 -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행정 제재 절차 비교 분석 연구
 - 체납징수 우수사례 벤치마킹
 - 지방세제 차이점 분석
 - 신세원 발굴 사례 수집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세정과)

선진 지방세 제도 국외 정책연수 결과 보고

I 연수 개요

- 기 간 : '19. 6. 8.(토) ~ 6. 19.(수) / 10박 12일
- 연수국가 : 동유럽 4개국(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 연수내용
 -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행정 제재 절차 비교 분석 연구
 - 체납징수 우수사례 벤치마킹
 - 지방세제 차이점 분석
 - 신세원 발굴 사례 수집
- 연수자 : 3명

II 연수 내용

【체코】

가. 일반현황

- 국 명 : 체코 공화국
- 면 적 : 78,865km²
- 수 도 : 프라하
- 인 구 : 1,062만명
- 언 어 : 체코어
- 종 교 : 로마가톨릭(27%), 개신교(2%)
- 정부형태 : 중앙집권공화제/다당제&양원제

- 화폐단위 : 체코 코루나 (Kč로 표기)
- 기 후 : 서안해양성기후

나 . 조세제도 운용

- 1993년 1월에 시행된 소득세법(Income Taxes Act, Law 586/1992)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급격한 경제변동에 따라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지사를 포함해 체코 내에 신규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등기 후 30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등록해야한다.
- 회계법(Accounting Act)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로 납세자가 회계연도(Tax Period)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으며, 회계연도를 역년(Calendar year)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체코 정부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2007년 8월 21일 하원을 통과해 10월 5일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2008년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율이 대폭 인하되고 부가가치세 할인 세율은 상향조정됐다.

주요 조세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소비세 및 사회보장세 등이 있다. 2008년 1월부터 전기 및 천연가스 공급에 에너지세를 신설해 부과중이고, 지방세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2015년 1월부터 재산세와 상속세가 폐지

됐다. 2013년부터는 부가세가 기존보다 1% 인상돼 생필품의 부가세는 15%, 일반제품의 부가세는 21%가 적용된다. 2015년부터 의약품, 도서, 대체 불가능한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기저귀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춰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이 도입됐다. 세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을 통해 유아가 있는 가정의 과세 부담 연간 약 1만 체코 코루나 하락, 세율 인하를 통해 상품가격 약 4% 인하로 가계 소비 상승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6년 12월부터 체코 재무부는 현금, 카드 및 상품권 등 매출 거래(은행송금 거래 제외)가 있는 사업자가 모든 매출 거래를 전자적으로 등록해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매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EET(Registration of sales / Elektronická Evidence Tržeb) 시스템을 시행했다.

- 모든 호텔 및 숙박업과 식당을 시작으로 시행됐으며 EET 도입에 따른 등록단말기 구입 및 설치 등의 비용향상을 고려하여 식당에서의 식음료(주류 제외) 서비스에 대한 VAT를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체코 재무부는 사업자의 세금징수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의 시장경쟁력을 감소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결정했으며 EET의 도입으로 인한 조세수입 증가로 체코 정부는 2016년 역대 최초로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 2017년 3월부터 도소매업 대상으로 2단계가 시행됐으며 2018년 3월부터는 간이 요식업(노점상, 페스티벌 음식 판매, 농산물 마켓 등)에 적용되고 2018년 6월에는 미용사, 수리공 등의 서비스업 및 나머지 분야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EET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매출등록 누락 등이 적발될 시에는 최대 50만 코루나(약 2만 달러)의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ET 도입 이래 국세청에서는 367개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며 이 중 257개 업체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외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및 다양한 세금 우대 조항의 삭제, 물가상승률의 1/3을 연동 한 연금제도 등이 실패했다. 사회보장세의 본인부담 뿐만 아니라 고용주 부담분도 개인 소득에 포함되는 Super-gross wage 제도 폐지가 전반적인 소득세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는 2017년 초까지 유지되고,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연대 기여금 또한 계속 부과되고 있다.

다. 조세 종류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19%

- 정부는 기업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08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으며, 2010년 이후부터 19%가 적

용되고 있다. 법적실체가 아닌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PE)의 경우, 해외법인이 현지에 과세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해외 법인은 체코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 기타원천과세(Withholding taxes)

- 체코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로열티, 저작권료 등에 부과하는 기타원천과세율도 종전의 1~25%의 차등 적용을 2008년부터 15%로 단일화해 시행하고 있다.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15%

-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자는 체코 영주거주자 및 체코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들이며, 이 밖의 경우에는 체코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007년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15~32%까지 차등적용 되던 개인소득세율이 2008년 1월 1일부터 1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 소득을 2007년까지 공제대상이었던 사회보장세 본인 부담분 뿐만 아니라 고용주 부담분도 개인소득에 포함되는 Supergross Wage로 확대함으로써, 평균 실효세율은 23.1% 정도가 된다.

- 고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연대 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은 2013년에 도입됐으며, 고용 소득 및 자영업 소득에만 적용된다.

연대 기여금은 연간 사회 보장 한계(월평균임금의 48배, 2017년 기준 연간 1,306,560 코루나)를 초과한 고용소득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해 7% 세율로 적용된다. 7% 연대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은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과세 소득에는 현물급부(예 : 주택 수당, 개인용도의 회사차 사용 등), 사업 활동 수입 및 자본 소득, 임차료 및 기타 출처에서 얻은수입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고 과세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말 이전)에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현지 체코 회사 또는 외국 회사의 지사에 의해 직접 고용된 외국인인 고용계약이 이루어진 첫날부터 고용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현지 회사 또는 외국 회사의 지점)는 소득세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며, 근로자가 고용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자의 세금 신고서를 대체하는 연말 정산서를 준비해 준다. 외국 회사가 계약에 따라 체코 회사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지역 국세청에 개별 납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도 세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 반기 또는 분기별 선급금을 납부하고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VAT / DPH : Daň z přidané hodnoty): 21%

- 체코의 부가가치세법은 EC Directive 2006/112의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체코 내에서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역내구입 및 일반적인 수입에 대해 부과된다.

- 일반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는 2013년부터 21%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류(과자, 커피, 차등포함), 서적, 특정건강 관련 제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14%에서 15%로 인상 적용되고 있다.

2014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내각이 부가세 조정을 시사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특정서적과 제약품, 영유아용식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됐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모든 호텔 및 숙박업과 식당을 시작으로 시행된 EET(전자매출등록시스템) 도입에 따른 등록단말기 구입 및 설치 등의 비용향상을 고려하여 식당에서의 식음료(주류 제외) 서비스에 대한 VAT를 기존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 10% (영유아용 식품, 특정도서, 특정제약) *'15년부터 발효
- 15% (식품, 식음료 서비스(주류제외), 대중교통서비스, 사회주거주택 건축)
- 21% (일반 상품 및 서비스)

- 재화의 수출과 수입을 비롯한 수출입 물품의 국제운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보험 및 금융관련 용역
- 우편관련 용역
- 교육

- 건강 및 복지관련 용역
- 특정 조건하의 부동산 양도나 금융리스
- 부동산의 임대
(단기리스, 주차장리스 및 귀중품보관소의 리스를 제외)

- 2016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의무 납세자들은 전자 부가가치세 관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체코 내 등록된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에게만 적용되며, 2016년 1분기 안에 부가가치세 관리 명세서를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 특별소비세(Excise tax)

- 체코에서 생산되거나 체코로 수입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 주류, 담배에 부과된다. 특별소비세는 제품에 개별적으로 정액 과세되며,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담배는 정액세금과 더불어 판매가격의 일정비율도 과세되고 있다.

○ 도로세

-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트럭 등 상용차량은 차축수와 중량에 따라 부과된다. 승용차는 연간 1,200코루나(엔진 800cm³까지) ~ 4,200코루나(엔진 3,000cm³ 이상), 트럭은 연간 1,800코루나 ~ 5만 4,000코루나(36톤 이상)까지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LPG, CNG, E85(바이오가솔린)

연료를 사용한 화물 차량(최대 12톤)은 도로세가 면제된다.

○ 부동산세(Real estate tax)

- 토지세와 건물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와 지역, 사용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건축부지의 경우 m²당 2코루나, 그 외의토지에 대해서는 0.2코루나가 부과된다. 농지에 관한 부동산세는 농지의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건물세는 등록된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상업용 건물은 m²당 2~10코루나, 거주용 건물은 m²당 2~8코루나로 계산된다.

○ 부동산 취득세(Real estate acquisition tax)

-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판매가격 또는 법정 전문가가 결정하거나 부동산의 위치, 크기 및 유형을 고려하여 지침에 따라 계산된 통상시장 가격의 75% 중 더 높은 가격의 4% 고정 세율로 부과된다. 2016년 11월 1일부터 일부거래(합병 및 분할)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세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 에너지세

- 2008년부터 전기, 가스 및 고체연료에 대한 에너지세를 신설했으며, 이는 에너지의 공급자 또는 송부시스템 운영자에게 부과된다.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적 필요에 의해 30kw 이하로 생산되는 친환경 절약전기의 경우 에너지세에서 면제된다.

라. 시사점

- 기본적으로 직접세, 간접세, 기타세 3개의 분야로 구분된다. 직접세의 주요세목은 소득세, 부동산 및 도로세법, 부동산 취득세법이 있고,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법, 소비세법, 관세법, 에너지 원천세 특별법 등이 있다. 기타로는 다양한 체코법률이 적용되어 체코 사회보장과 공공 건강보험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적기금 성격의 세금과 일반적으로 지방법이 적용되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순수 지방세의 종류로는 부동산세와 행정 및 지역세가 있다.
- 지방세인 부동산세는 해당 지역의 재정수입이 되며 해당지역 관할 재정청을 통해 국가가 부과하고 관리한다.
- 체코의 지방세는 국세와 함께 징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다. 체코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조세의 내용확정에 관한 자유재량 권한이 없으며 새로운 유형의 세금을 부과할 권한도 없다. 단, 입장료나 가산금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요율을 확정하거나 요율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할 때의 원천징수와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통해 체납징수에 대한 행정력 낭비는 크지 않았다.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킨다.

마. 사진



【헝가리】

가. 일반현황

- 국 명 : 헝가리 공화국
- 면 적 : 93,030km²
- 수 도 : 부다페스트
- 인 구 : 1,012만명
- 언 어 : 헝가리어(독어 및 영어 구사 가능자 다수)
- 종 교 : 가톨릭(55%), 칼빈교(16%), 루터교(3%), 기타(26%)
- 정부형태 : 대통령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실권자는 수상)
- 화폐단위 : 포린트(Forint, Ft 또는 HUF로 표기)
- 기 후 : 대륙성 · 해양성 기후, 지중해 아열대성 기후

나 . 조세제도

- 헝가리 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재정 적자를 타개할 목적으로 2013년 1월 세법개정을 단행하였다.

다. 조세 종류

○ 법인세

- 1991년에 제정된 “The Act LXXXI” 에 근거하여 법인세 및 배당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법인은 법인세, 배당소득세, 사회보장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 사업세와 부동산세 등의 과세대상이기도 하다.
- 법인세율은 36%에서 18%로 낮아졌다가 현재는 16%로 개정되었다.

- 건물세(평방미터당 900포린트), 토지세(평방미터당 200포린트)
- 법인세 계산 구조

<법인세 계산 사례 : 헝가리>

법인세차감전 회계상 순이익	40,000,000
(+) 익금, (-) 손금	20,000,000
배당액	(10,000,000)
과세표준	50,000,000
법인세(16%+4%)	(10,000,000)
법인세차감 후 회계상이익(a)	30,000,000
배당액(b)	(10,000,000)
배당세(20%)	(2,000,000)
유보 이익(a-b)	20,000,000
순 배당액	8,000,000

<법인세 계산 사례 : 대한민국>

회계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차가감 소득 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한도 계산 기준소득금액=차가감 소득금액+법정+특례+지정-이월결손금)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법정/특례기부금 한도초과1년, 지정기부금 3년 한도미달 범위 내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개념 : 익금총액-손금총액)
(-) 이월결손금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신 소득 등)
(-)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과 세 표 준

-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 공통점

- 회계이익으로부터 과세표준을 도출하고
- 회계상 이익에 세법에 규정된 익금, 손금 항목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차이점

- 배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의 배당액을 과세표준에 과세한 다음 이를 지급받은 자에게 배당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이중과세 효과를 제거하고 있으나, 헝가리는 배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를 지급받는 자에게 배당액을 종합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있다.

- 헝가리의 경우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

우리나라는 법정·지정·특례기부금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공제율이 상이하야 계산구조가 복잡하고, 일정기부금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헝가리의 경우 이월결손금은 손금 항목으로 규정. 우리나라 기부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형식이다.

○ 개인소득세

- 기본세율 20%에 일정소득액 이상 3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소득세율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한시법인 ‘2006~2008 新 균형재정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다.

소 득	세 율
1,700,000포린트 이하	18%
1,700,000포린트 초과	306,000+(1,700,000초과*36%)

- 헝가리의 개인은 개인소득세, 사회안전기부세, 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등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 소득세는 사회안전기부세를 포함한다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 사회보장세, 사회보장부담금

- 고용주부담 : 2012년부터 사회보장부담금 중 고용주부담은 사회보장세 명목으로 걸히고 있다. 즉, 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이 세금(Social Security Charge)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세율은 총 급여의 27%로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 별다른 영향은 없으나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 고용자부담 : 일부 상향조정되어 의료보험, 노동보험은 기존 7.5%에서 8.5%로 각각 높아졌다. 연금보험은 10%이다.

○ 금융거래세

- 2013년부터 계좌이체, 부채상환, 커미션,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출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 행위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였다. 금융거래액의 0.2%가 과세되며 신용카드 출금 시 1회 거래당 6천 포린트 한도 내에서 0.3%가 과세된다. 공동 소유계좌 및 특정목적용을 위해 개설된 계좌(연금계좌, 장기투자계좌)를 통한 주택 분양금 납부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

- 로빈후드세는 정부 재정적자 완화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에너지 기업에만 징수되고 있는 특별세이다. 이미 2012년 5월 실칼만플랜 2.0으로 8%에서 11%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11%의 로빈후드세를 31%로 인상해 에너지 기업들의 비판을 받았다. 2013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기업들의 세금은 총 50%=법인세 19% + 로빈후드세 31%이다.

라. 시사점

- 2017년 1월 25일 발표된 국제투명성지수(CPI)에 따르면 헝가리는 OECD 35개 회원국 중 31위를 기록할 만큼 투명성이 낮은 국가라는 점에서 불안한 점이 있지만 정책에 있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 헝가리 노동자의 경우, 실 급여의 약1/3에 해당하는 33.5%를 사회보장세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 이는 연금 10%, 의료보험 7%, 실업수당 1.5%, 소득세 15%로 구성되어 있다.
- 헝가리 근로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사회보장세 33.5% 외에도 각 기업에서는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세를 2016년 기준 27%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금 대비 매우 높은 세금을 납부한다.
정부는 고용주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채용 인력 임금 지불 여력을 개선해 자국 노동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노동자의 실제 급여 인상을 지원해 자국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희망하고 있고, 성장 친화적 세금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금융거래세는 금융 투기 규제와 빈곤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인데 금융위기 이후 더 공감을 얻어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외환 거래액의 0.05%이하만 세금을 거둬도 연간 수천억 달러를 모으고 과도한 투기도 잠재울 수 있다며 이 돈은 의료, 교육, 식수 등 세계 또는 국가 차원의 공공재 또는 기후변화 대처에 쓸 수 있다. 빈국 원조에 획기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 사진



【크로아티아】

가. 일반현황

- 국 명 : 크로아티아 공화국
- 면 적 : 56,594km²
- 수 도 : 자그레브
- 인 구 : 416만명
- 언 어 : 크로아티아어
- G D P : 548억원
- 종 교 : 로마카톨릭(88%), 세르비아정교(4%), 회교 등
- 정부형태 : 공화제/다당제&단원제
- 화폐단위 : 쿠나(kn)
- 기 후 : 서안해양성기후, 온난습윤성기후, 지중해성기후
- 특이사항 : 1991. 6. 25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

나. 조세 제도 운영

- 지역세 등 모든 세금은 국가가 주도하고, 시 자체적인 권한은 제한적이며 규모도 작음
- 자체적인 수입원
 - 레스토랑, 카페 등 관광객 소비로 인한 수입⇒ 전체 예산의 5% (수입원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건물(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Second house tax) :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년 약 100유로 부과, 렌트하는 경우 ~ 렌트 금액에 세율적용 부과

-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 연 400만유로(약 52억원), 총 판매금액의 세율 3%, 세일러와 바이어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누가 낼지 정함
- (시에서 부과) 각 세대마다 매월 세금 부과(관리세): 연 700만 유로(약 91억원)
- 도시를 정비(거리, 가로등 등)하는데 필요한 세금
-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세금 부과(상하수, 도로 등 정비)
- 도시 진입 시 세금 부과 : 도시 통행을 제한하기 위함
- 로컬버스 외 관광버스가 도시 진입 시 1회 110유로 지불
- 관광버스 정차 가능 지역 2곳(시 전체 카메라 시스템 설치)
- 카페, 레스토랑 앞 야외 공간 사용료 지불
- 가게 내부 공간이 비좁아 야외 공간 활용 시 사용료 지불
- 모든 세금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 부과하고 이의신청 시스템도 운영

다. 조세 제도 종류

조세 분류	세 부 항 목
국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세
지역세	보험·증여세, 도로·자동차세, 선박세, 경화조작식기계 세금
지방시세	누진소득세 및 소득세, 소비세, 별장세, 공공부지 사용 세금
연대세	소득세, 부동산양도세

○ 법인세

- 일반법인 소득세율은 20%이며, R&D 등의 활동과 관련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소득세

-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주된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한편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마다 추가세를 부과한다. 시(市) 인구에 따라 세율은 0~18% 사이이며, 자그레브가 가장 높은 18%이다.

<구간별 소득세율>

세율	월 세액 기초	연간 세액 기초
12%	2,200HRK(쿠나) 미만	26,400HRK(쿠나) 미만
25%	2,200HRK이상 13,200HRK 이하	26,400HRK 이상 158,400HRK 이하
40%	13,200HRK 이상	158,400HRK 이상

한편,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12%가 배당금, 소득 등에 부과되고, 15%가 이자, 로열티 등에 부과된다. 해당 세는 EU 이외 지역으로 법인세율 12.5% 이하를 적용하고, 크로아티아와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법인, 자연인에게 지급되는 이자 등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25%, 숙박 등 관광업 관련 부문에 대해서는 세율 13%가 적용되며, 생필품(빵, 우유, 서적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5% 세율이 적용된다. 식당은 기존 13%에서 25%로 부가가치세율이 상승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용되고 구매자가 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특별세

- 석유, 주류, 담배, 커피, 명품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세가 부과된다.

○ 부동산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 현존하는 부동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5% 정도의 부동산 양도세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이 주식지분으로 운용되거나 주식자본 증가를 위해 운용되는 경우, 재산이 회사의 인수, 합병 및 분할의 절차로 획득되는 경우 면제된다.
(회사법의 조항에 부합하는 경우)

○ 외국투자 기업을 위한 적용 조세제도

- 외국인 투자가 적용세율
 -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 대우를 받게 되는 조세와 관련해서도 크로아티아 자연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적용된다.
- 납세방법 : 납세방법은 현지법인의 법에 따른다.
- 과실송금 보장
 - 외국 투자자를 위해 과실송금을 100% 보장하고 있다.

○ 한국-크로아티아 체결 협정

· 이중과세 방지협정

-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발효일: 2006년 09월 15일)

· 사회보장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일: 2006년 5월 31일)

라. 시사점

○ 매년 자동차 재등록으로 체납 방지

- 크로아티아에서는 매년 자동차를 재등록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세금이 체납되면 등록이 불가하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거의 없다.
-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벗어나 독립한 나라로 아직도 사회주의 사상이 국민들에게 남아있어 납세의식이 상당히 높아 체납이 많지 않다.

마. 사진



【슬로베니아】

가. 일반현황

- 국 명 : 슬로베니아 공화국
- 면 적 : 20,273km²
- 수 도 : 류블라나
- 인 구 : 208만명
- 언 어 : 슬로베니아어
- G D P : 56,933백만 US달러
- 종 교 : 로마카톨릭(58%), 이슬람교(2%), 동방정교 등
- 정부형태 : 중앙집권공화제/다당제&양원제
- 화폐단위 : 유로
- 특이사항 : 1992. 4. 15 독립

나. 조세제도

- 개인소득세율은 3단계 누진세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2008년 이후 2012년까지는 변화가 없었으나 2013년에 일시적으로 최고세율을 50%로 인상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과세구간을 2008년 이후 매년 인상
 - 세율구간의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장치
- 부가가치세율은 2단계 세율로써 기본세율 20%와 경감세율 8.5%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변동이 없음
 - 경감세율은 음식, 수도공급, 제약, 책과 기타 종이인쇄물, 허가된 공연·스포츠 경기, 주택, 기타 지정된 서비스 등에 적용

-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며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매년 1%씩 인하
 -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업종은 0% 세율 적용
 - 펀드투자법에 의한 투자펀드이며 이익의 90% 이상을 11월 30일까지 분배하는 펀드
 - 연금법에 의한 연금펀드, 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관리하는 보험회사

- 60% 지역, 경제, 학교 등에 사용 / 40% 새로운 투자
 - 지역세 10%, 관광세 20%, 주차수입 5%, 중앙정부 보조 30%, 부동산 거래세 2%
 - 50만 유로 : 지역 스포츠, 행사 등 사용
 - 120만 유로 : 유치원 운영시설 사용
 - 경제적 수준이 높아 지출에 큰 문제가 없음

- 토빈세
 - 1970년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것으로 국제투기자본의 무분별한 거래로 자본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단기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함

다. 시사점

- 관광세 부과
 -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관광세(다른 명칭: 도시세City Tax)라는 이름으로 호텔 투숙객에서 1인 1박에 1유로~7유로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도에서도 추진하고자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 지역, 숙소의 등급, 시즌, 여행자 연령별로 세율과 규정이 다르지만

호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숙박한 기간만큼 인원수 별로 지불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 호텔업계나 숙박 이용객들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관광세 부과는 관광수익을 올리기에 앞서 효율적으로 여행자들에게 쾌적하고 수준 높은 관광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라. 사진

